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2. 1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2월 10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0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6. 2. 1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광우)

- 가. 제안이유
 -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,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이를 조례에 산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점용료,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
(안 제5조제2항, 제9호제3항)
 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 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함(안 제10조의 별표2 신설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